

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(2026년) 시행계획 수립 보고



구 미 시

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(2026년) 시행계획 수립 보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보고이유

지자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 :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(2026년) 시행계획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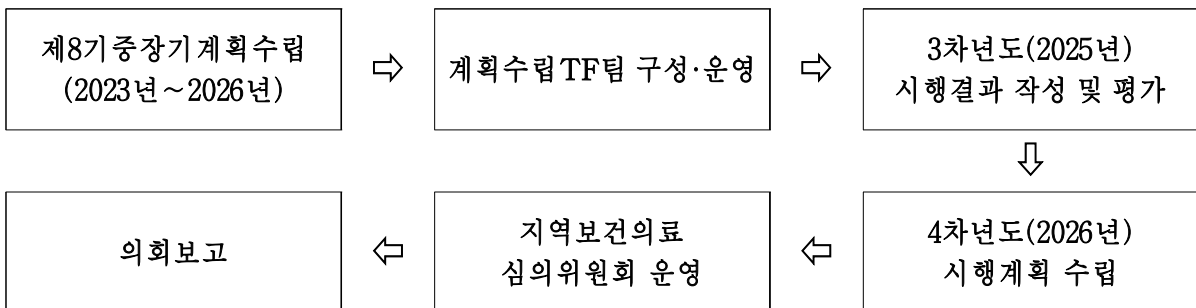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
-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6조
- 「구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2조

○ 필요성 : 법정계획

다.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절차



라. 세부추진일정

연번	시기	내 용	비고
1	2025. 10월	▶ 『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(2025년) 시행결과 및 4차년도(2026년) 시행계획』 중앙 지침교육 및 시달	
2	2025. 10월 ~ 2026. 1월	▶ 계획 수립 TF팀 구성 및 운영(구미·선산보건소)	
3	2025. 10월 ~ 2025. 12월	▶ 『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(2025년) 시행결과』 작성 및 자체평가 ▶ 『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(2026년) 시행계획(안)』 세부과제 및 주요 성과지표 결정 ▶ 『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(2025년) 시행결과 및 4차년도(2026년) 시행계획』 최종(안) 수립 ▶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(12.18)	
4	2026. 1월	▶ 의회 보고 및 계획서 道 제출	

마.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(2026년) 시행계획 주요 변경내용

구분	대표적 변경내용	비고
자원투입	▶ I-①-1.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강화 - 인력 : (당초) 6명 → (변경) 5명 ☞ 변경사유 : 인력 현행화 반영 - 예산 : (당초) 110백만원 → (변경) 108백만원 ☞ 변경사유 : 국도비 예산 축소에 따른 예산 변경	14건
주요내용	▶ I-②-2. 필요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 -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개소 [신규] ☞ 변경사유 : 2026년 신규사업 반영	8건
성과지표	▶ II-①-1. 감염병 발생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 - (당초) 역학조사 완성도 - (변경)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☞ 변경사유 : 정부합동평가 지표 변경에 따라 성과지표 변경	4건
성과지표 목 표	▶ III-①-2. 심뇌혈관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-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(≥30세) (당초) 50.7% → (변경) 37.6% ☞ 변경사유 : '25년 35.4%로 경북(33.2%) 대비 높은 수치이나 '25년 목표치(40.2%)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미달성함. '24년 39.7%, '25년 35.4%로 2년간 구미시 평균값 기준으로 설정	8건

바. 4차년도(2026년) 추진과제별 세부과제

추진전략	추진과제	세 부 과 제
I.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	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역할 강화	①-1.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강화
		①-2. 지역보건의료기관 역할 강화
	② 지역사회의료자원을 활용한 필요서비스 제공 확대	②-1. 지역 내 응급의료 운영 내실화 및 대응능력 강화
		②-2. 필요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
II. 감염병 대응·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	① 감염병 대응 및 관리체계 매뉴얼 구축	①-1. 감염병 발생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
	② 감염병 선제적· 체계적 예방 및 관리	②-1. 국가예방접종 및 결핵관리사업
		②-2. HIV/AIDS 관리 및 친환경방역사업
③ 감염병 대응조직 확충 및 인프라 구축	③-1. 감염병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(강화)	
III. 시민 맞춤형 건강증진	①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심뇌혈관 및 만성질환 예방·관리	①-1. 건강생활실천 확산 및 건강환경 조성
		①-2. 심뇌혈관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
	② 인구집단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	②-1.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
③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	③-1. 국가 암 조기검진, 건강검진사업 및 사후관리	
IV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	①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체계 강화	①-1.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구미 만들기
		①-2.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추진
	② 고령사회 대비 의료- 돌봄-관리체계 구축	②-1.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		②-2. 치매 예방 및 친화적 환경조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

관계법령

□ 「지역보건법」

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
2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·단기 공급대책
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4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
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해당 시·군·구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군·구의회에 보고하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·군·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·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

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에 중복·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, 수립 방법·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

제6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)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

건강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)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·군·구 의회에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, 시·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)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·도 의회에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 내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2.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
4.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
5.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소 관 부 서		보건의료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이 은 경
	팀 장	박 동 주
	담 당 자	이 승 은 (480-4012)